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19 선고 2016나34723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19 선고 2016나3472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25 선고 2015가단5090089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신용보증기금

피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A

변론 종결 2016. 9. 21.

판결 선고 2016. 10. 19.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25. 선고 2015가단5090089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원고에게,

(1)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 한다), 선정자 C은 연대하여 91,472,774원 및 그 중 89,721,229원에 대하여 2014. 5.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2) 선정자 D, E는 피고, 선정자 C과 연대하여 (1)항 기재 금원 중 89,000,000원을 한도로 70,499,648원 및 그 중 68,806,163원에 대하여 2014. 5.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1)항 기재 금원 중 27,000,000원을 한도로 20,973,126원 및 그 중 20,915,066원에 대하여 2014. 5.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나. 평택시 J 대 301m²에 관하여,

(1) 선정자 D과 제1심 공동피고 B 사이에 2014. 2. 5.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제1심 공동피고 B는 선정자 D에게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 2. 6. 접수 제567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가.항 기재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와 선정자들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하였고, 제1심 공동피고 B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구상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고,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구상금 청구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제1심판결문 제3면 제3행부터 제5면 제5행까지, 별지 청구원인 및 별지 상환계획표)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피고 D"을 "선정자 D"으로, "피고 C"을 "선정자 C"으로, "피고 E"를 "선정자 E"로, "피고들"을 "피고와 선정자들"로 각 고친다.

나. 제1심판결문 제4면 제8행의 "상당하다." 옆에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6다218768 판결 참조)."를 추가한다.

다. 제1심판결문에 첨부된 별지 상환계획표 중 2021년말에 변제할 이자 "43,391원"을 "43,392원"으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와 선정자들에 대한 구상금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 오성우

판사 여현주

판사 홍득관

별지